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10. 30.(금) 13:00 ~

▣ 장 소 : 경북 영천 은혜사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b>【심의사항】</b>		
1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내외 서면2터널 조성 (*설명)	공개
2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공장 진입로 조성 변경	공개
3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개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공개
5	「참매」 매사냥 전통적 계승을 위한 포획 및 사육	공개
6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7	「서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8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사계지구 호안정비 사업	공개
9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공개
10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문화재구역 조정	공개
11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12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주택 및 창고 신축	공개
1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4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	공개
15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내 산신각 해체보수	공개
16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학교 연립사택 증축	공개
1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공개
<b>【검토사항】</b>		
18	「단양 영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b>【보고사항】</b>		
1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38건)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10-01

### 1.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내외 서면2터널 조성

#### 가. 제안사항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내외 서면2터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내외 서면2터널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8호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 지정일 : 1962.12.7.

(3) 신청내용

○ 사업명 : 울릉도 일주도로 2 서면2터널 조성공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 일원

○ 사업내용

- 규모 : 서면2터널 L=620m 중 247m, 차선평폭 8m, 2차선

\* 문화재구역(75m),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172m)

- 터널 최장 단면 규모 : 폭 11.639m, 높이 6.980m

- 시공 공법 : NATM적용(기계굴착, 제어발파)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내외 해안변 경사지를 굴착하여 터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터널 시공 공법 및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 10. 20.)**

- 울릉도 일주도로2 서면2터널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안’이 공사 진행상 거주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 시공성, 경제성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 지정문화재 구역을 훼손함
- ‘실시설계안’에 의한 터널 건설공사는 천연기념물 제48호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구역의 일부(북부구역)를 관통하는 ‘기본설계안’의 지하구간이나, 또는 전혀 훼손이 없는 ‘검토안’보다는 자생지 하부의 암석지 상당부분을 굴착하는 계획안임
- 터널공사 시공시 적절한 진동저감 공법을 이용하면, 상부에 자생하는 향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터널 공사 완료 후에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이나 배기가스 등이 향나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나무에 대한 현황조사 사업예정지 선정 사유 등을 검토할 때,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 10. 20.)**

- 서면2터널 건설안의 경우 실시설계안은 기본설계안이나 검토안에 비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가장 많이 관통하는 안이다. 따라서 향나무의 서식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반의 굴착은 새로운 단열 등의 발생이나 기존 단열의 개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통구미 터널의 경우도 누수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지하수의 누수나 교란은 향나무의 서식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터널의 시공은 지하수의 누수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차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계획구간의 일부구간은 기존 터널에 비해 상위에 설치될 계획이므로 지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공방법도 지반 진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설계에 의하면 터널 입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향나무 서식지 통과 전구간이 제어발파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열의 발달이나 개방을 방지하여 지하수의 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파방법보다는 기계식 굴착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2.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공장 진입로 조성 변경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공장 진입로 조성 변경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공장 진입로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15.4.25.) 사항에 대하여 진입로 길이 및 면적 등에 대한 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장진입로 조성 변경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 일원
  - 변경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부지면적/진입로길이	1,459㎡ / 117m	1,810㎡ / 136m
토목공사	법면높이 4.9m, 옹벽 1.9m	법면높이 2m, 옹벽 1.9m
조경공사	소나무 20주, 철쭉 30주, 잔디 99㎡	소나무 20주, 철쭉 45주, 잔디 110㎡
허가기간	2015.4.25. ~ 2016.4.28.	2015.4.25. ~ 2017.10.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3구역 : 평슬라브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라. 검토의견(\*\*\*\*\*)**

- 변경허가 신청된 사업은 해풍으로 인한 도로 결빙 우려 및 공장 진입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로 부분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저어새 번식 및 갯벌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5.10.1.)**

- 본 신청건은 갯벌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공장의 안전한 차량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새로 조성하고자 금년 4차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건으로 진입로 연장 및 조성기간 연장을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건임
- 현장 확인결과, 진입로 조성공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안대로 한다면 지방도와의 연결부분이 상당히 넓어져 지방도에서 갯벌이 훤히 내다보일 정도여서 갯벌경관은 물론 저어새의 서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변경허가는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15.10.1.)**

- 현장조사결과, 저어새가 인근 대송도, 소송도 갯벌에 8마리 내외 관찰되었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지역까지는 최단 600m 거리에서 저어새가 관찰되었으며 500m까지 서식할 가능성이 있었음.
- 저어새는 움직임과 시각적 변화에 영향을 잘 받는 종으로 지형적으로 눈에 띄는 구조물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서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였음.
- 도로의 진입 안정을 위해 공장 진입로 길이와 면적을 확대하는 공사가 저어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시각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
- 따라서 조경에 있어 해안에 가까운 공장쪽에 잔디의 면적을 줄이고 시야를 가릴 수 있게 수목 조경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3.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사업임
- 2015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5.27) 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수중 계류장치 계획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 \* (부결사유) 신청 사업지는 천연기념물 저어새의 번식과 육추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저어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리 \*\*\* 등
  - 사업내용 : 불음도 저수지 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 사업면적 15,714㎡(부유물 면적), 태양광 모듈 6,375㎡, 전기설비 60㎡, 태양전지 3,333장(300w), 설비총량 1,000kw
    - [기존과 변경사항] 수중 계류장치 앵커 수량 12개 추가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3구역 : 건축물 2층이하(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15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저어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업에 대하여 수중 계류장치 계획을 추가하여 재신청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저어새 번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5.10.1.)**

- 본 신청건은 금년 5차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허용기준 3구역 내의 불음저수지에 지역주민들의 일부가 참여하는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불음저수지 주변의 무인도는 저어새의 번식지 및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불음저수지는 담수저수지로 저어새가 새끼를 양육하는 동안 새끼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저수지임
- 따라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에 저수지의 습지환경 및 저어새의 먹이활동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강화갯벌 저어새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15.10.1.)**

- 사업예정지는 불음도 내 유일한 저수지이며 너머 갯벌과 이어져있어 만조시에 저어새를 비롯한 물새들이 도래하는 장소임
- 다수의 주민들은 저수지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다년간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추진 허가를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사업이 추진되면 저어새를 비롯한 물새들의 서식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서식지 조성 노력이나 서식지 보호 노력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수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어렵다고 판단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이동전화 중계기 전주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이동전화 중계기 전주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사하구 ·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
  - 사업내용 : 이동전화 중계기 전주 설치(1본)
    - 높이 13.5m(최고높이 16m), Ø400m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구역 : 개별심의

##### 라. 검토의견(\*\*\*\*\*)

- 신청사업은 서낙동강변 1구역에 이동전화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5.10.21.)

- 본 신청건은 서낙동강 우안에 인접하여 높이 16m의 이동전화중계기용 전신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서낙동강은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며 낙동강 하류의 모래섬을 잠자리로 하고 김해평야를 먹이터로 하는 겨울철새들의 서식지간 이동경로로 이용되고 있음
- 철새들의 이동경로상에 고립되어 위치한 높은 인공구조물(전신주, 송신탑 등)은 악천후시 철새들의 충돌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본 신청건의 허가여부는 철새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5. 「참매」 매사냥 전통적 계승을 위한 포획 및 사육

###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를 포획·사육하여 매사냥 전통적 계승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를 포획 사육하여 매사냥 전통적 계승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소재지 : 전국 일원
  - 지정일 : 1982.11.16.
- (3) 신청내용
  - 개요 : 매사냥에 쓰이는 참매를 신청인이 포획하여 \*\*\* 선생에게 사사 받은 매조련 방식(낮가림)과 적정의 먹이 공급 등 전통방식의 매 풀기 환경과 각 조련단계를 통해 조련하여 사냥매로 활용하고자 함.
  - 포획방법 :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매장을 설치하여 참매를 유인해 포획
  - 포획장소 및 수량 : 경기 파주·문산 일원(자유로, 임진강변) 참매(보라매) 1개체
  - 포획 및 사육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간

### 라. 검토의견 (\*\*\*\*\*)

- 신청인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호 \*\*\* 응사로부터 매사냥 기능을 사사 받았으나 현재 시·도지정문화재로는 지정받지 못하였으며 '13년 SBS스페셜 제 315회 '매를 품은 소녀' 편에서 부녀간 매받이 전수훈련 내용이 방영되면서 참매의 불법 포획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청에서 현지 확인 후 매받이 참매를 자연 방사한 사실이 있음.

- 한국 매사냥의 원형보존 및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신청에는 의미가 있고 신청인의 매사냥 계승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참매의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매사냥의 목적으로 참매 포획 신청 시 기능보유자의 기준없이 허가가 된다면, 향후 동일한 사유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10. 21)

- 본 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매사냥에 활용할 참매를 포획하여 사육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임.
- 신청자의 매사냥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이자 희귀종인 참매를 포획, 사육, 매사냥에 활용하는데는 전통방식의 계승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참매의 건강(각종 질병 및 전염병 등), 주변 사람 및 가축의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므로, 신청자와 같이 공인이 아닌 사인에게 포획 및 사육을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반드시 참매의 포획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매사냥 기능보유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6.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중문동 2785-1번지

○ 지정일 : 1962.12.7 / 1993.8.1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 \*\*\*번지

○ 사업내용

구분	다가구주택(1)	다가구주택(2)	다가구주택(3)	비고
대지면적	326㎡	414㎡	466㎡	
건축면적	154.18㎡	154.18㎡	154.18㎡	
연면적	425.61㎡	425.61㎡	425.6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성토 2.8m 옹벽 4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11.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된 1구역에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3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난대림과 근접된 나대지에 약 14m 높이의 건물 신축 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7.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번지
- 지정일 : 1962.11.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번지
- 사업내용
  - 구조 및 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아스팔트 스윙)
  - 규모 : 대지면적 466㎡, 건축면적 182.105㎡, 연면적 657.99㎡
  - 높이 : 옥상 수조 포함 최고높이 18.1m(건축높이 16m, 지상5층)
  - 기타 : 동백나무 등 106주 수목 식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평슬라브 최고높이 8m(2층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동사항(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로부터 28m 이격된 곳에 다가구 주택을 18.1m(2층)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주변 대다수 건축물이 1~2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건축 신축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 10. 26.)

- 다세대주택 신축 신청지역은 비자나무로부터 북동쪽 약 28m 이격되어 있으며, 비자나무 주변 약 30m 이내 지역은 대부분 1~2층 규모의 건축물들이 형성되어 있음.
- 다세대주택 신축 부지는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고시 2009.9.14.) 상 1 구역으로 경사지붕 12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5층(최고높이 18.1m) 규모의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비자나무 왜소화 및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8.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사계지구 호안정비 사업

###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사계지구 호안정비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사계지구 호안정비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외
  - 지정일 : 2011. 1. 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사계지구 호안정비 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번지 외 공유수면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모래 유실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 서쪽 ~ 사계포구 일원의 해안사구 보호
  - 사업내용
    - 전석 쌓기(0.5m<sup>3</sup>급) : L=534m
      - 경사도 비율 : A구간 1:1.5(H : 2~4m), B구간 1:3.0(H : 1~2m)
    - 야자수 매트 설치 : B=1.50m, L=501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년 6월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38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 3구역 : 1구역(개별심의), 3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라. 검토의견 (\*\*\*\*\*)

- 사업구간이 천연기념물 사계리 용머리해안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 2015.10.18)

- 호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지형적으로 사계항과 용머리해안 사이에 소만의 형태를 이루는 지역이다. 사계항 쪽 해안은 해안에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편의 용머리쪽 해안은 사구가 발달하고 있고 주택은 사구의 후위에 형성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자료와 2008년 이후 위성사진에 의하면 자연적인 사구의 유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 일반적인 해안사구의 특성과 같이 이 지역도 인위적인 지형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구는 침식과 퇴적 작용이 반복되는 지역으로 현재와 같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해안의 대규모 인공구조물의 설치하는 해류의 흐름을 교란시킬 수 있고, 교란된 해류의 흐름이 해안 사력의 침식과 퇴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해안 또는 연안의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사전에 반드시 영향 검토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 2015.9.23)

- 해양수산부 발간 2014년도 연안침식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용머리해안에서 사계포구까지 침식 등급이 B등급(침식과 퇴적이 나타나지만 안정적인 해빈 유지)으로 안정적이지만 해안도로(올레 10코스)및 친수 공간 건설에 의한 모래 유실이 발생되며 지속적인 모래 유실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음.
- 위 도서에 침식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파랑에 의한 침식이 아니라, 식생구간의 증가로 인해 백사장이 잠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음.
- 그러나 위 구간은 2014년도에 처음 관측이 시작되었기에 경년 변화를 단정하기는 시기상조로 사료되며, 태풍해일에 의해 파랑의 쳐올림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제안되고 있는 표준 단면도에 의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자연석을 이용한 전석 쌓기 호안은 모래 유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모래 유실 지역의 경사와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인 시공이 요구되며, 시공 후 순비기 등 해풍에 강한 식물로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 방문시 해안 지역의 부유물질을 보면 파도가 유실 지역까지는 내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폭풍해일시 파랑이 유실 지역에 내습하면 현재의 공법으로는 모래 유실을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안에 잠재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내습 파랑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능하다면 올레뿐이나 해안경관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해 용머리해안부터 사계포구까지 교량형 보드워크를 설치하여, 탐방객들이 해안으로의 접근과 해안도로에 의한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량형 난간을 가진 보드워크의 설치를 추천함.
- 확실한 침식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연적인 해안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유실이나 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자연석만을 배치하는 것을 적극 추천함.

#### 바. 의결사항 : 부결

## 9.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2015. 7. 2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 2015. 7. 31.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 지정 요청(제주특별자치도)
  - 2015. 8. 7.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15. 8. 26. 제8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2015. 9. 10. ~10. 9. 지정예고
- \* 제출의견
  - 대상 토지 : 한림읍 금능리 \*\*\*번지
  - 건의 내용 : 문화재 확대지정 편입 토지외의 잔여토지는 현상변경 및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2구역으로 지정(지자체측 주민 의견 수렴시 기 제기된 사안)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 지정일 : 1971. 9. 30.
- (3) 지정구역 확대 사유
  - 소천굴 모래 제거공사 중 추가 발견된 동굴에 대하여 2011년도에 측량 조사를 시행한 바, 동굴유로의 제3입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
  - 추가 조사된 31필지를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용암동굴이 지 자연·역사적 가치를 보존·관리해 나감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동굴 함몰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

(4)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안)

소재지	기 지정면적			추가 지정 신청면적			변경 지정면적		
	필지	지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필지	지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필지	지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제주시 한림읍	246	1,575,117	548,671	31	507,773	103,069	277	2,082,890	651,740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내역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b>합계</b>		<b>31필지</b>		<b>507,773</b>	<b>103,069</b>		
1	금능리	919-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박 * *
2		919	임	1,602	1,602	서울 강남구 신사동 ***-**외	장 * * 외 3인
3		919-2	임	662	66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 * *
4		918	임	496	4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이 * *
5		918-1	임	496	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송 * *
6		918-2	임	1,001	1,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송 * *
7		917	임	413	4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심 * *
8		917-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	박 * *
9		917-2	임	941	941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오 * *
10		2243-2	임	182,705	21,16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11		907	임	1,769	1,769	서울 강남구 도곡동주공아파트	이 * *
12		905	임	3,620	1,712	서귀포시 예래로 102번길 **	박 * *
13		906	임	3,491	3,491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
14		904	임	3,273	3,273	제주시 삼도일동 ***-*	장 * *
15		903	임	1,279	1,279	미등기	방 * *
16		875	임	2,638	2,63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	강 * *
17		902	임	3,302	3,302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
18		901	임	2,235	2,235	제주시 삼도일동 ***-*	장 * *
19		900	임	4,783	1,700	서귀포시 예래로 102번길 **	박 * *
20		874	임	4,069	2,66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외	홍** 외 1인
21		873	임	2,136	2,136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유 * *
22		876	임	6,069	6,069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외	박** 외 4인
23		856	임	3,183	3,183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
24		857	임	5,021	5,021	부산 중구 동광동5가 **	이 * *
25		858	임	2,036	2,036	전남 여수시 공화동 ***-*	최 * *
26		859	임	5,564	2,259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2가 ***	홍 * *
27		2316	도	182,705	2,922	국유지	국(건설부)

28		산20	임	58,612	22,02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29		산21	도	3,750	1,936	국유지	국(건설부)
30		산1	임	8,033	1,356	제주시 삼양일동 ****-*	한* *
31		산22	도	10,565	1,961	국유지	국(건설부)

**라. 검토의견(\*\*\*\*\*)**

○ 측량을 통하여 추가 조사된 동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5.7.27./ 가결)**

- 기존 소천굴 연장 동굴유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기존 지정된 허용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함
- 주민의견 수렴
  - 기 간 : 2015. 5. 19 ~ 6. 10.
  - 대 상 : 관련부서 및 마을주민, 제주시 문화예술과, 한림읍사무소
  - 결 과 : 의견접수 3건
    - 보호구역에 편입되면 재산권행사, 각종 건축 등 제한됨으로 기존 용암 동굴지대(소천굴)로 충분하므로 확대지정 반대
    - 문화재구역 잔여 토지가 2구역으로 지정, 현상변경 및 건축행위 가능지로 재산권 행사 허용시 조건부 동의함
    - 문화재구역 확대지정에 찬성하나 적절한 보상요구가 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신규 편입대상은 기존의 소천굴의 서측 연장부로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다수의 동굴 2차 생성물이 발견되고 있음. 특히 이들 중 용암동굴 지대에서 형성될 수 없는 석회질 2차 생성물의 발달은 지질학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므로 보존, 보호가 필요함
- 따라서 소천굴의 연장부로 확인된 지역의 지정구역 편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 소천굴은 동굴 전체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동굴 내에 보존되어 있는 내부의 동굴미지형이 매우 뛰어난 가치를 보여주는 용암동굴임. 소천굴은 크게 두 개의 주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주굴은 탄산염퇴적물에 의해 통로가 막혀 있었음. 그 이유는 과거 소천굴의 다른 입구(제3입구)가 존재하였으나 해변으로부터 이동된 탄산염 사구퇴적물이 동굴의 입구와 통로를 막았기 때문임
- 제주시에서는 소천굴 제3입구에 있는 탄산염퇴적물을 제거하여 제2입구를 원래 막혀있기 전의 상태로 복원하였으며, 그 결과 소천굴의 새로운 통로가 발견되었음. 동굴 내부에는 과거 동굴 내로 우연히 들어온 동물뼈, 역사학적 가치를 지니는 토기와 과거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은 후에 남겨 놓은 동물뼈가 여러 지점에 남아 있고 또한 이 동굴 내에는 용암동굴이 형성된 후 용암이 흐르면서 남겨놓은 여러 미지형이 잘 발달하며, 일부 구간에는 용암동굴생성물도 잘 나타나 있음.
-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연유산적 가치는 이 동굴 내에 분포하는 탄산염 동굴생성물임.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새로이 발견된 소천굴의 통로 내에 넓은 구간에 현재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 이들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구의 형성 연령과 이들 동굴생성물에 대한 지질학적인 조사가 요구됨.
- 따라서 소천굴 내에 새로이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역으로서의 확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소천굴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도 지역 내 세계자연유산 확대 지정 연구조사에서 세계자연유산의 후보로서 고려되고 있는 동굴임. 현재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구간의 하류 연장선에는 한들굴이 분포함. 따라서 한들굴과 소천굴은 하나의 용암동굴계일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가 요구됨.
- 만일 이 두 동굴이 같은 기원의 용암지대로부터 형성된 용암동굴계라면 한들굴도 보호지역에 추가도 확대지정 할 필요가 있음.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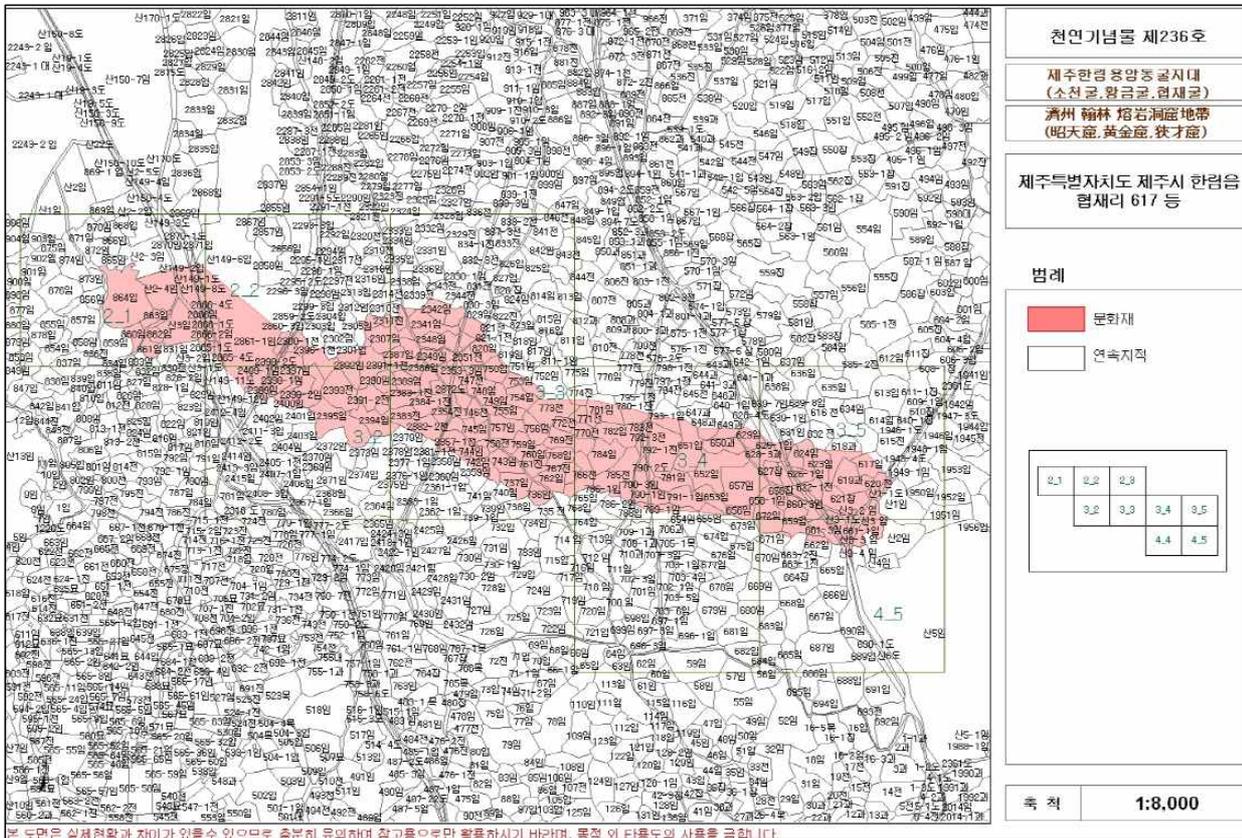
- 소천굴을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에 포함시켜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할 당시(1971.09.30.)의 소천굴은 제1입구에서부터 제3입구까지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그 이후의 발달 상태나 규모는 제3입구로 유입된 모래로 완전히 막혀 있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제3입구까지만 지정구역으로 설정되었음.

- 2010년10월 제3입구가 발굴되어 출입도 가능해져 북서 방향으로 약 705m 더 연장되는 것이 확인되고 측량도도 작성되었음.
- 소천굴 지표에는 탄산칼슘(CaCO<sub>3</sub>)으로 이루어진 사구가 두겹게 발달되어 있어(특히 제3입구 주변부터 하류구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이나 당처물동굴과 같은 화려한 석회장식 용암동굴로 변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가 확장대상 동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소천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확대지정 후,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2014.03.11.)에 의거 종합학술조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
- 소천굴의 끝부분 이후, 하류 지역에는 한들굴, 1132번 도로 개설중 발견된 동굴, 팔자굴, 조롱굴, 정수구굴 등의 동굴들이 연이어 발달하고 있어, 원래 소천굴은 이들과 연결되어 바다까지 발달되어 있었으나, 중간 중간에서의 동굴의 함몰이나 유입된 용암으로 막혀 여러 개의 동굴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지정구역 확대는 신청된 안으로 정하되, 소천굴 끝부분 이후의 동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천굴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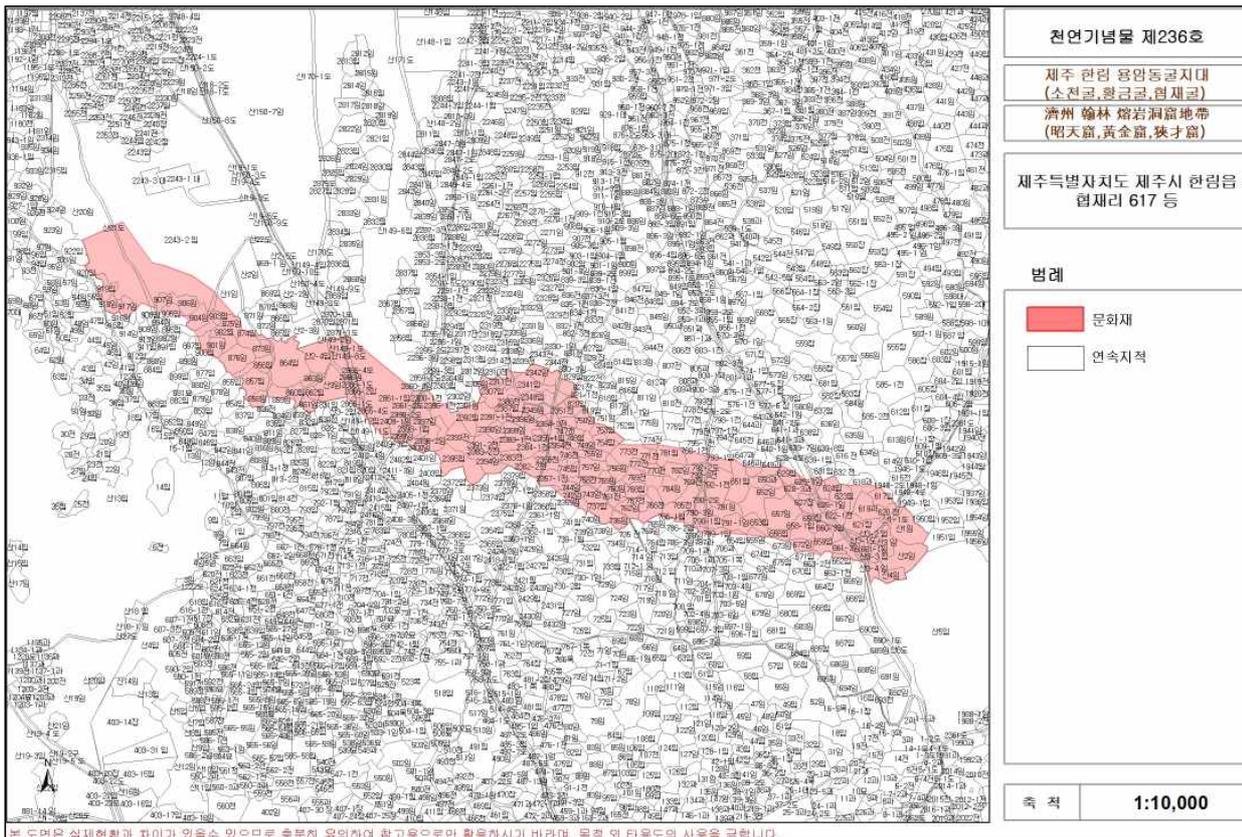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가결**

붙임 : 위치도 및 관련 도면

### (현재 지정구역도)



### (추가 지정구역도)



## 10.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문화재구역 조정

### 가. 제안사항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문화재구역 조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경과
  - 2011. 1. 1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 2015. 6. 18            문화재구역 변경 제안(양양군)
    - 양양군 오색약수 인근 망월사 부지 민원해결 과정에서 오색약수 지정구역이 잘못 고시된 것을 확인
  - 2015. 8. 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15. 8. 26            제8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2015. 9. 10~10. 9 지정예고(의견 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25 외
  - 지정일 : 2011. 1. 13
- (3) 지정구역 변경 사유
  - 지적 현황 측량 및 오색약수 현지조사 검토 결과 오색약수 지정 구역이 잘못 고시된 것이 확인되어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 (4) 문화재구역 조정(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기 지정면적		변경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m <sup>2</sup> )	지정구역(m)	지적(m <sup>2</sup> )	지정구역(m)		
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임	5,964,121	200	5,964,121	42	국 (산림청)	지정구역 일부 해제
2		산1-20	중	5,248	200	-	-	국 (산림청)	지정구역 해제
3		산127-3	천	-	-	4,722	262	공유 (강원도)	지정구역 추가
4		460-2	잡	-	-	5,906	96	공유 (강원도)	지정구역 추가
	계			5,969,369	400	5,974,749	400		

**라. 검토의견(\*\*\*\*\*)**

- 오색약수 문화재구역 지정이 잘못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 천연기념물인 양양 오색약수 지정구역 지번이 산1-20과 산1-25의 2개 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바른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건임.
- 오색약수는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 현황 측량 성과에 따라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현지조사 결과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판단됨.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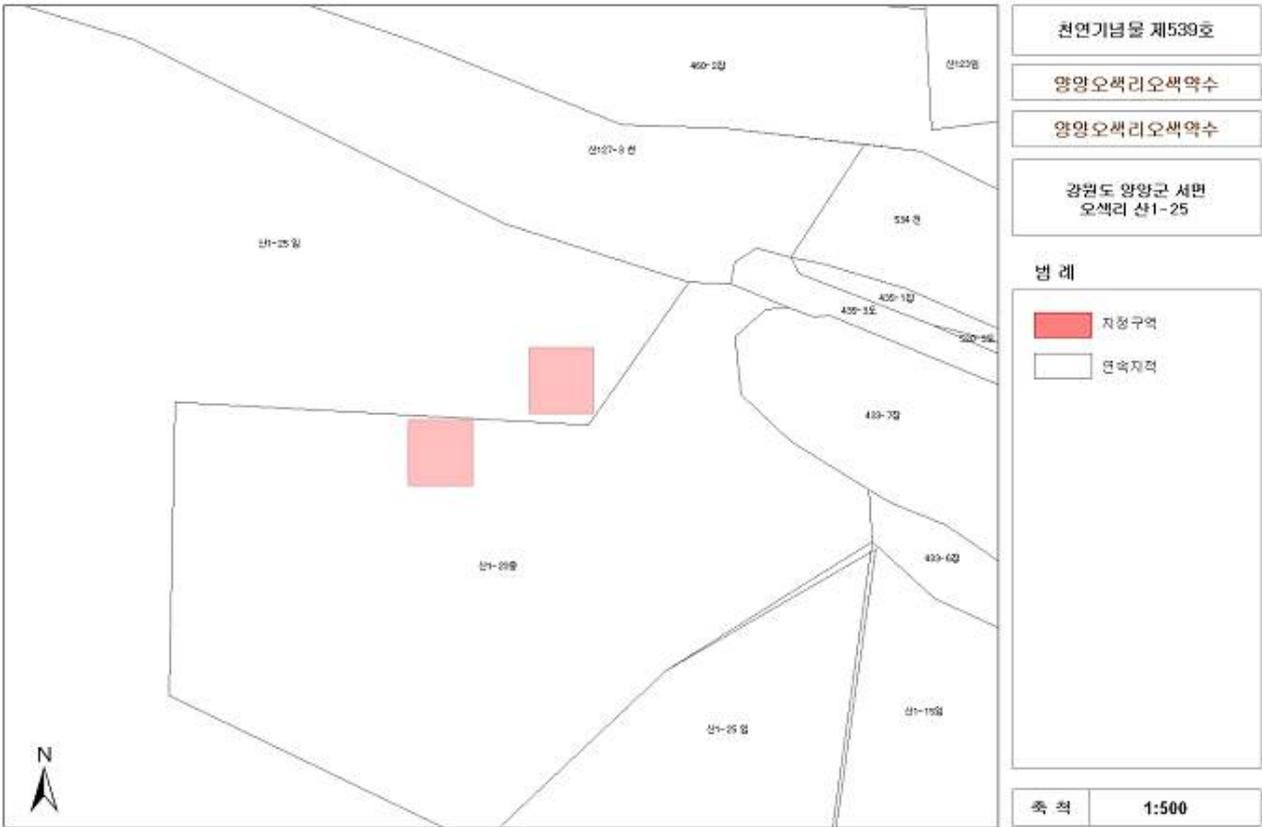
- 천연기념물 제529호(2011.1.13.) 양양 오색약수의 지정구역 2필지 400㎡가 실제의 지적·지번과 차이가 있어 지정구역은 반드시 정정되어야 함.
-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indexMain.do>)에서 제공하는 국가지정문화재(특히 천연기념물과 명승) 지정구역 공간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정구역은 현지의 지적경계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설정하고 좌표나 위성사진 및 지형도 등의 자료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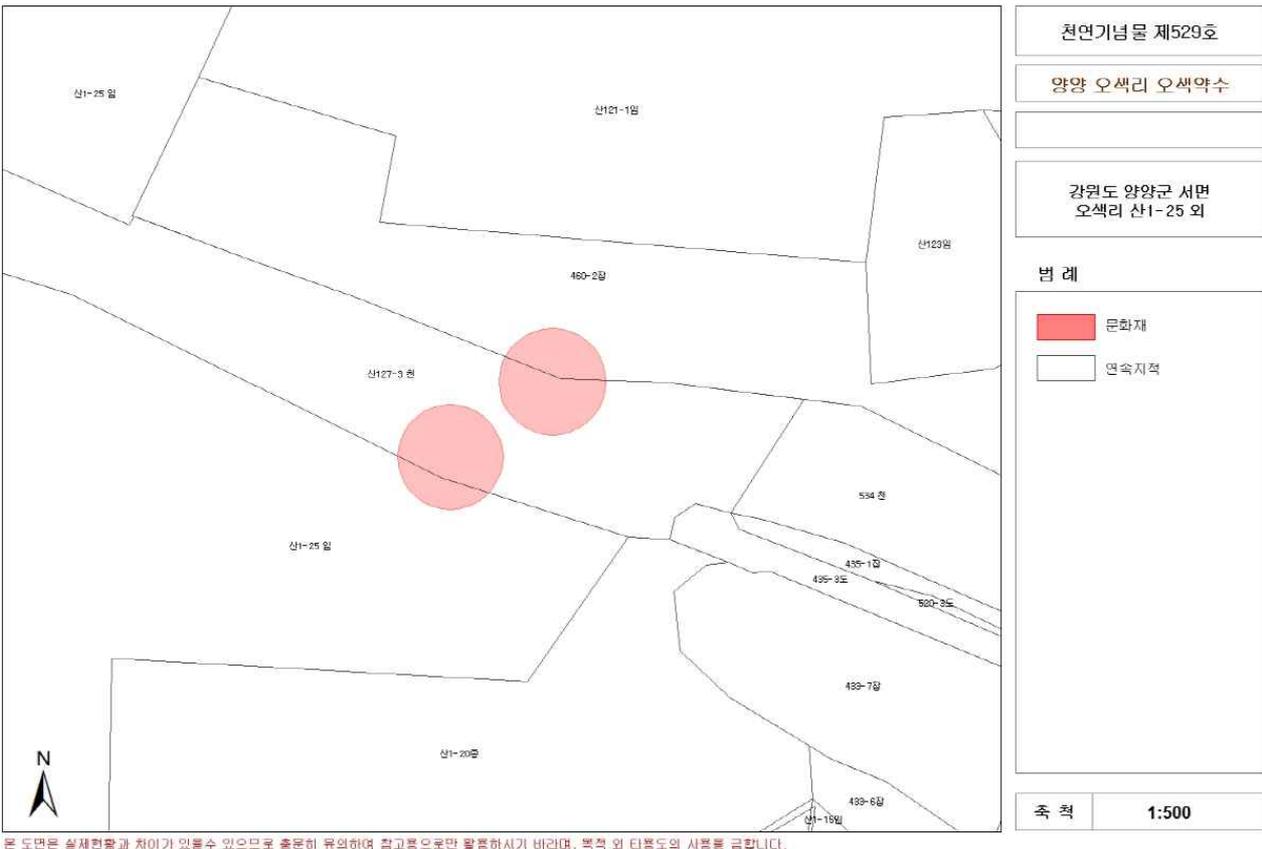
- 기존의 지정구역에 대한 지번이 잘못되어 지적현황 측량을 통해 얻은 변경지번으로 정정해야 함.
- 향후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 신청시에는 제출된 지적도만으로는 현장에서 위치가 맞는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형도와 지적도가 100% 동일할 수는 없지만 지형도 위에 지적도가 표시된 것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와 같이 지정구역이 잘못 표시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가결**

(현재 지정구역도)



(조정 지정구역도)



## 11.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주요 경과
  - 2011. 1. 1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 2015. 6. 18                    문화재구역 변경 제안(양양군)
    - 양양군 오색약수 인근 망월사 부지 민원해결 과정에서 오색약수 지정구역이 잘못 고시된 것을 확인
  - 2015. 8. 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2015. 9. 10~10. 9            지정예고(의견수렴)
-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지정구역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면을 조정하는 사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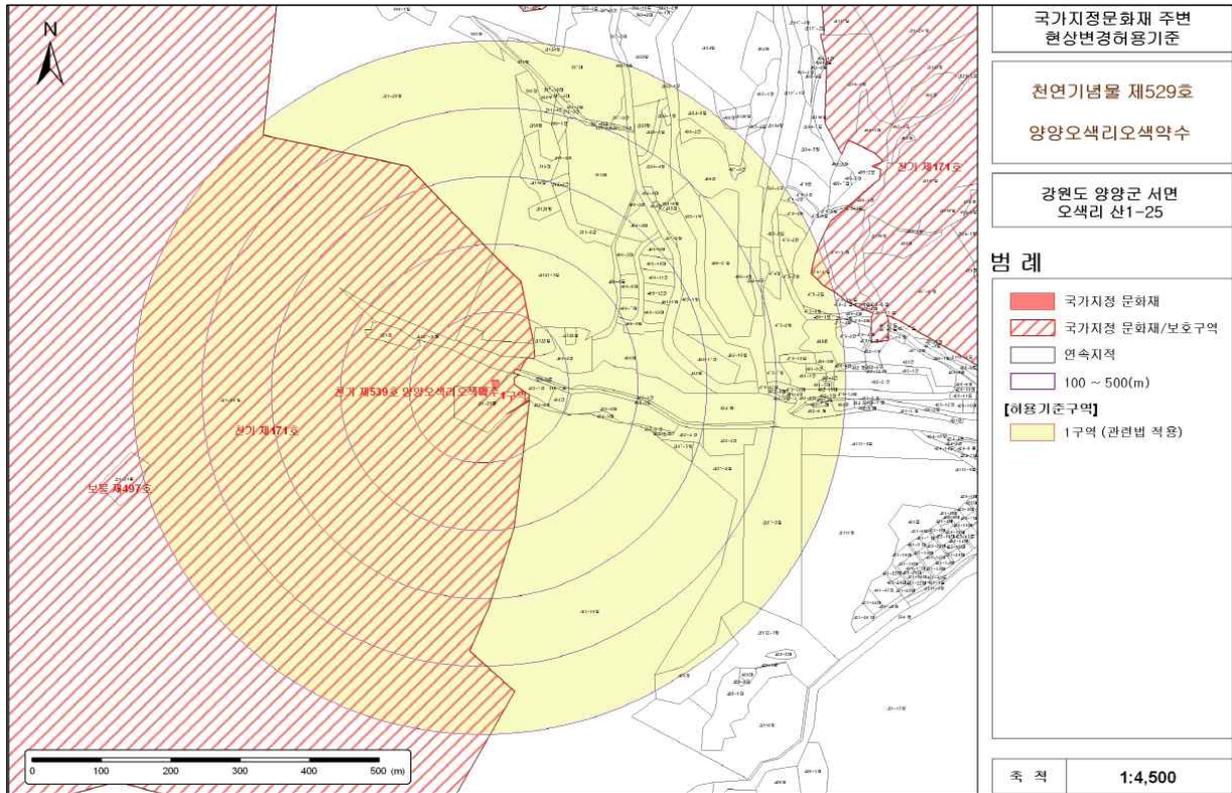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외
  - 지정일 : 2011. 1. 13
- (3) 신청내용
  -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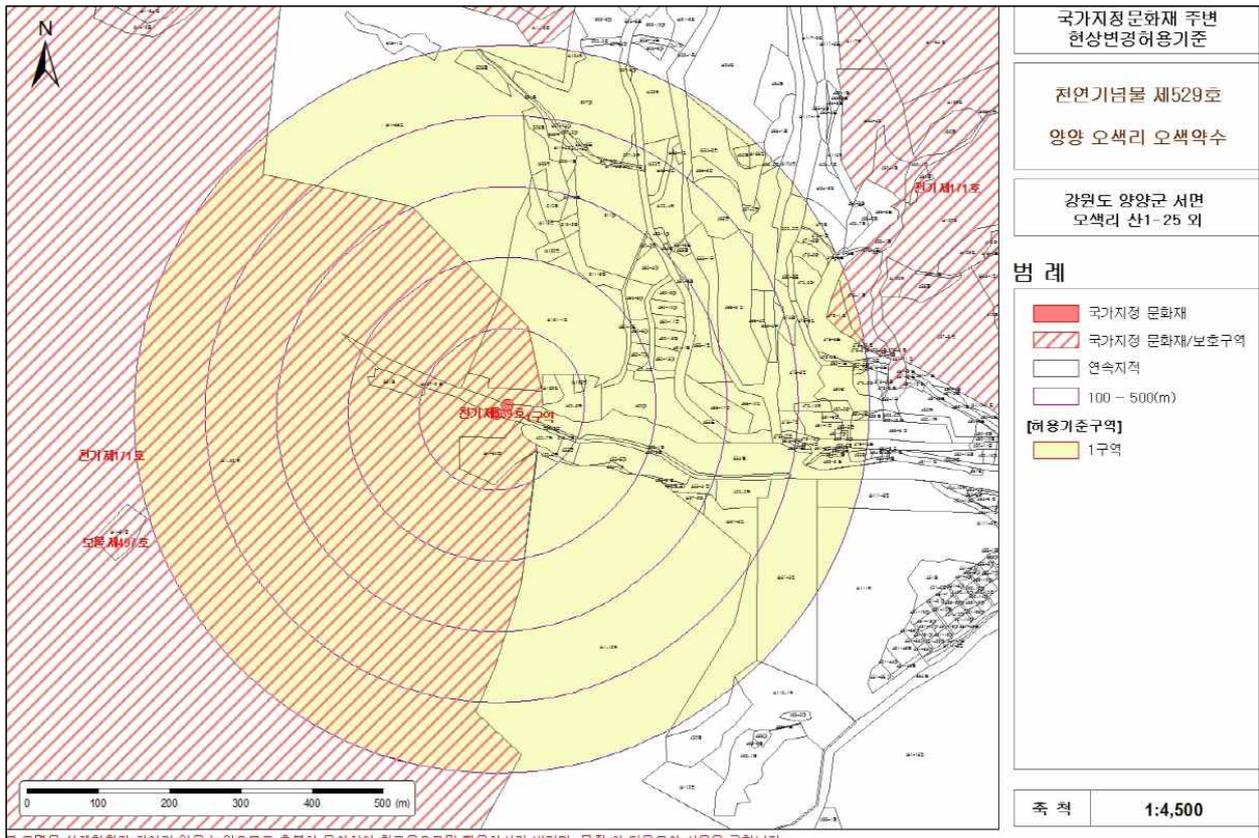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라. 의결사항 : 가결

○ 허용기준 도면(당초)



○ 허용기준 도면(조정)



## 12.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주택 및 창고 신축

###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등
- 지정일 : 2005. 1. 3

(3) 신청내용

- 사업명 : 주택 신축 및 부속창고 건립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
- 사업내용 : 주택 신축 및 부속창고 건립
  - 대지면적 660.00㎡, 건축면적 121.24㎡, 연면적 121.24㎡(주택 84.79㎡, 창고 36.45㎡),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4.9m(지상 1층, 다락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9.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3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기존 규모 개축·재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9.18.)

- 해당 문화재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결과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계단식 논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환경, 즉 역사문화환경을 가능하면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신축하려는 부지는 가천마을에서 외부로 넘어가는 언덕에 위치하여 사방으로부터 조망되는 곳이므로, 만일 이러한 규모의 주택과 창고가 신축된다면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13.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등
  - 지정일 : 2005. 1. 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신축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신축
    - 건축면적 140㎡, 연면적 140㎡(주택 77㎡, 농산물판매장 63㎡),
    -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5.2m(지상 1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5.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기존 규모 개축·재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9.18.)

- 해당 문화재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결과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계단식 논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문화환경을 가능하면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록 신축하려는 부지가 과거에 축사가 존재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축하려는 건물이 축사가 아니라 주택과 소매점이므로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문화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14.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

### 가. 제안사항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 내외 탐방로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 등

○ 지정일 : 2013.2.6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한탄강 탐방로 조성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 일원

○ 사업내용 : 관람코스 조성 L=4,980m

- 산책로(L=2,410m, B=2.0m), 데크(L=2,505m, B=1.5m), 교량(L=65m, B=1.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0m~500m 이격

\* 문화재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기존 건축물 개축·재축 가능)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한탄강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0.22.)

- 신청사업의 둘레길 노선은 수차의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선정된 대안으로 판단됨.
- 둘레길의 노폭은 지형에 따라 경사가 심한 구간은 좁게 조성하고, 목재데크 구간은 설치가 불가피한 구간으로 한정하며, 기존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실시설계가 되어야 함. 교량은 한탄강 본류 방향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위치해야 하며 가벼운 형식의 교량으로 이루어져야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5.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내 산신각 해체보수

### 가. 제안사항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내 산신각 해체보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내 산신각 해체보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11호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89 등

- 지정일 : 2014.08.28

(3) 신청내용

- 사업명 : 구례 사성암 주변정비(산신각 보수)

-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

- 사업내용 : 산신각 해체 및 보수

- 기존 : 면적 10.64㎡, 정면 2칸·측면 1칸, 초익공, 겹처마 맞배지붕, 높이 5.95

- 계획 : 면적 9.72㎡, 정면 1칸·측면 1칸, 다포계, 겹처마 맞배지붕, 높이 7.88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에 산신각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10.2.)

- 기존 정면 2칸, 측면 1칸의 익공식 맞배집이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다포식 맞배집으로 크게 바꾸어 계획이 되었음. 해체 보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
- 산신각을 다포식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근거와 의미가 없고, 특히 계획된 형태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건물 높이가 높아 전체적인 건물 밸런스가 맞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좁고 협소한 현장 여건과도 불합리하고 주변의 자연 암석 경관과도 조화가 안 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16.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학교 연립사택 신축

### 가. 제안사항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학교 연립사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내 학교 연립사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 200번지 등
- 지정일 : 2008. 1. 8

(3) 신청내용

- 사업명 : 보길지역학교 연립사택 증축공사
-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 \*\*\*
- 사업내용 : 기존 사택 및 창고 철거 후 연립사택 신축
  - 기존 사택 및 창고 철거(사택 5동, 창고 2동)
    - 건축면적 183.30㎡, 연면적 183.30㎡, 철근콘크리트, 높이 3m(지상 1층)
  - 연립사택 신축(1동)
    - 건축면적 161.65㎡, 연면적 320.50㎡, 철근콘크리트, 높이 8.5m(지상 2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3.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내 기존 사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연립사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10.20.)

- 보길지역학교 연립사택 증축공사는 보길도 윤선도 원림과 접한 곳으로 건물의 높이, 외벽재, 징크마감 등이 명승지 경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본 부지는 고산 윤선도가 어떠한 작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학예연구사 서면검토 의견 / 2015.10.12.)

- 세연정의 당초 경역대는 현 보길초등학교의 담장에 직접 면하여 직선으로 단절되어 정원공간의 원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건물이 정원 내부 어디서나 바로 보이는 등 문화재의 경관과 관람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임
- 본 신청건은 세연정의 작정의도에 나타난 낙서재, 동천석실 경역과의 관념적, 시각적 연결성 및 세연정 정자에서의 조망권을 단절하고 침해하는 높이와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길 초등학교 부지에 속하게 된 세연정의 원형공간의 회복에 대한 상호노력이 급선무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17.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 지정일 : 2009.12.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가야 구원리 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317㎡, 건축면적 67.89㎡, 연면적 95.97㎡,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7.6m(지상 2층)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3.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 신청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10.28.)**

- 신축예정 부지는 마을 뒤편에 경사지 위치하여, 건축 신축시 수려한 가야산 경관을 가리게 되어 계곡에서의 조망권이 모두 상실될 것으로 예측됨.
- 더구나 마을에 있는 기존 주택들도 모두 1층인데 비해 본 계획은 2층으로 되어 있어 주변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5.10.12.)**

- 신청지는 해인사에서 남동방향 2.5km 떨어진 지점으로 해인사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조망이 되지 않으나, 구원1리 마을의 중앙부를 통과하여 대경암지와 가야산 구원리사지로 진입하는 산길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 유적지 진입부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역사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을 허용하되 건물의 높이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10-18

### 18. 「단양 영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단양 영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단양 영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08년 충청북도(단양지역) 천연동굴 일제조사(문화재청)
  - '14.11월 영천동굴 수중구간 조사용역(단양군)
  - '14.12.11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심의
  - '15. 5.13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연구용역(단양군)
  - '15. 7.16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충청북도)
  - '15. 9. 2~4 지정조사 실시
  - '15. 9.23 제9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15.10.16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주요내용

- 문화재 명칭(안) : 단양 영천동굴(丹陽 令泉洞窟)  
(Yeongcheondonggul Cave, Danyang)
- 소재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 1번지 일원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신청사유(지정가치)
  - 국가지정문화재의 천연기념물 지형·지질 지정기준(제11조제1항) 라항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3)에 '침식 및 퇴적작용에 의한 지형'에 기록된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임

- 동굴의 지상구간(65m)과 대형의 수중구간(210m)이 발달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 및 동굴생물이 발견되어 지질학적인 자원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
- 문화재 관리단체 : 단양군(단양군수)
- 문화재구역 : 3필지 / 67,071m<sup>2</sup>

**라. 문화재 현황(\*\*\*\* 조사용역 보고서 발췌)**

-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 영천동굴은 단양군청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약 15km, 제천시 남동방향으로부터 약 6km, 갑산(712m) 동사면 2부 능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급 동굴이다. 동굴입구의 주변 사면은 동굴수의 장기적인 유출에 의하여 형성된 두부침식의 영향으로 약 10여m의 급사면으로 개석 되어 있다. 동굴의 하부에는 빙기와 간빙기 동안에 형성된 폭우성 홍수에 의하여 급격한 침식작용에 의하여 깊은 하곡지형이 50여m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다
  - 하부 30여 m상에 용출수(Spring)2개가 있고, 입구로부터 약 100여m 하부 동사면 하부로부터 용천수(영천)가 지속적으로 서향으로 흘러나와 영천리의 개울천을 형성하고 남으로 관류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은 대동여도(大東輿圖)중 단양, 영춘(1856년 이후) 도엽(단양의 옛 지도, 2009)에서 갑산(甲山 747m)으로 표기된 도면 상단 남동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동굴 주변 2km내외에는 수많은 돌리네 현상과 관련된 싱크홀, 수직굴, 우발라, 카렌 등 수많은 지표 Karst 지형이 분포되어 있다. 동굴의 내부는 천정으로는 선사시대 때부터 불을 밝힌 광솔불 꺼스럼에 의하여 심각하게 그슬려서 동굴의 2차 생성물이 흑회색으로 채색 코팅되어 있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되어 있다
  - 또한 이들 용식구와 용식지형 등에 분포된 풍화된 사력과 진흙 및 인접 광산지로부터 이입되어 지는 쇄설물 등은 지하 공동 및 호수공간에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호수 바닥이 포함된 전체의 동굴 바닥에 20-25cm의 실트형 사양토가 동굴내부와 수중동굴 하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 수중팀의 활동시 탁도의 방해로 탐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실로 30-50 여 년 전 동굴 바닥에는 현재와 같은 사양토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동굴의 상부 주변지역에서의 채굴작업은 향후 더욱 심한 동굴 피복층으로 형성되어 동굴의 형상을 매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아 정책적 결단에 의한 광산 활동의 시급한 중지가 필요하다.

○ 연혁 및 특징

(연혁)

- 1973년 한국동굴학회(홍시환 박사 팀)에 의해 최초로 석회동굴의 영천굴(승泉窟) 명칭으로 탐사기록이 남겨져 있음(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008년 ‘충북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III’(문화재청)에서 ‘다’급(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의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보유하여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동굴)으로 평가되었음
- 2014년 한국동굴학회에 의한 조사를 통해 대규모 수중동굴의 발달 가능성이 제시되었음

(특징)

- 영천동굴(해발 220m)은 소백산맥에 속한 단양과 제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갑산(해발 747m)의 동남사면 하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 영천동굴은 석회동굴 중 알파인 프리에틱(phreatic)형 동굴군에 속한다.
- 총 연장 210m(미조사지역 미포함)의 동굴로 주굴과 지굴 4개로 형성되어 있다.
- 동굴 주변 2km 내외에는 다수의 돌리네현상(Solutional Doline)과 관련된 싱크홀, 수직굴, 우발라, 카렌 등 수많은 지표 카이스트지형이 분포하고 있다.
- 석회석 용식지형 빗물이나 지하수 따위에 의하여 암석, 광물, 토양 등이 용해되고 침식되어 이루어진 특수한 지형으로 석회암 지역에 발달하는 용식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 2차 생성물은 주굴의 끝단과 수중동굴의 입구가 만나는 주변 동굴 약 10여m에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2차 생성물의 분포는 2개의 용식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 주굴 및 지굴 중 90%의 통로에는 용식의 흔적이 경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영천동굴의 주굴과 지굴에서는 관박쥐, 개나리, 나방, 곱등이, 거미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천동굴에서는 상당기간 동굴에서 생활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 지정가치 및 기준

- 지정가치 : 동굴의 지상구간(65m)과 대형의 수중구간(210m)이 발달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 및 동굴생물이 발달함.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석회동굴) 해당

- 보존정비
  - 입구보호시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 후 설치
  - 안내판 : 문화재 설명 및 주의사항 표기한 표준안내판 설치
- 활용계획
  - 안전을 위하여 미개방 원칙
  - 동굴다이빙 전문가에 의한 학술탐사만을 위하여 입굴 허용
  - 향후 개방이 필요할시 별도로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

#### 마. 검토의견 (\*\*\*\*\*)

- 2008년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시 다등급(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동굴)로 평가된 바 있으나 동 조사시에는 수중구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금회 수중구간 조사 및 문화재지정 현지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및 지자체 의견)

##### (1)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5. 9. 4.)

- 문화재 명칭 : 단양 영천동굴
-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소재 석회암동굴로 갑산 남쪽 능선의 628-4 고지 남서사면 하단에 발달하는 소계곡 끝단에 동굴 입구 형성.
  - 오르도비스기 홍월리층과 미분류된 영흥층 고회질 석회암 분포지역으로 과거 여러 번 주민의 피난처로 활용되었다고 구전됨.
- 연혁·유래 및 특징
  -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오래되었으나 동굴이 수침되어 있어 탐사는 최근에 이루어짐. 동굴 내부에는 다량의 황토가 침적되어 있음. 주민에 의하면 과거에는 황토가 없었다고 함. 동굴 2차생성물이 형성되어 있으나 많지 않고 일부 훼손됨.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입구와 비침수 구역 일부 훼손, 침수구역 수중탐사 영상 분석결과 국가지정문화재급의 가치 확인되지 않음
- 종합의견 : 불임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영천동굴’ 조사 종합의견

2015년 9월 4일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소재 ‘영천동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입굴 탐사로 동굴 내부 조사가 수행되었고, 침수구간의 경우는 수중촬영 영상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조사,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인적으로 영천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발달하는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발달한 동굴로, 동굴의 일부 구간은 현재 지하수의 흐름이 지속되지 않아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간은 지하수로 충전되어 있거나, 지하수량의 변화에 따라 수중상태에 있기도 하고 공기 중에 노출되기도 하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 동굴의 규모는 조사 당시 공기 중에 노출된 지역은 주굴의 경우 연장은 대략 70m이며, 크고 작은 지굴들이 발달한다. 주굴의 동굴 크기는 최대 폭 약 5m, 최대 높이도 대략 5m 정도이며, 입구는 넓으나 중간 지점에 직립통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 좁은 구간 이후 다시 동굴은 넓어지고 있으나, 이후 구간은 지하수로 침수되어있어 호흡기 등 수중탐사 장비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 동굴 입구 구간과 침수구간의 접경구간은 다량의 점토가 집적되어 있다. 입구구간의 일부 사질점토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나, 침수구간의 접경구간에 있는 점토는 주로 석회암의 풍화잔류물로 사료된다. 동굴의 입구 구간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일부구간이 시멘트로 훼손되어 있다. 현재에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보호책이 설치되어 있다.

- 출입구로부터 석회동굴의 특징인 용식지형이 발달되고 약간의 2차 생성물들이 발달하고 있으나, 직립 출입이 가능한 구간은 이미 대부분 훼손되어 흔적만 남아 있거나 소량만 남아 있다. 직립 출입이 불가능한 구간에서도 2차 생성물들이 발달하고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다만 이 구간은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석순이나 석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동굴 입구에서 관박쥐 여러 개체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동굴생물로 곱들이나 지네, 거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굴 입구 지굴에서 발견되는 척추동물의 뼈는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동굴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영상자료들에 의하면 수중구간은 동굴 2차 생성물의 발달이 미약하며, 석회암의 용식에 의한 용식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많지는 않으나 2차 생성물의 존재는 지하수위의 변동성을 지시하여준다.
- 침수구간의 전구간이 확인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동굴의 총연장을 알 수 없다. 주민들의 구술에 의하면 상당한 연장을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에 해당한다.
- 영천동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어야할 국토의 지질환경을 대표하거나, 지각진화과정 연구에 중요한 지질학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술적 가치가 탁월한 동굴 특성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현재까지 미확인 침수구간으로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하여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조사가 수행된다면 동굴의 연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로는 양적으로나 다양성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굴 2차 생성물이나 미지형이 존재하고 있고, 추후 수중구간의 연장성이 확인된다면 석회동굴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2008년 '충북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천동굴은 "다"급으로 평가되었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 추가적인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시,도 지정문화재로서 검토하여 보존, 보호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 \*\*대 교수 현지조사 의견 / 2015. 9. 4.)

- 문화재 명칭 : 단양 영천동굴
-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동굴입구는 단양군 갑산의 남동측 기슭부(해발고도 220m)에 위치하며, 매포읍-제천 간 5번 국도에서 영천리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로부터 북동측 방향으로 800여m 정도 떨어진 계곡 상부에 위치함

- 동굴 입구부의 전면과 바닥, 벽, 천장 등은 시멘트 등에 의해 보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 동굴 아래에는 북동-남서 방향의 개울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개울을 중심으로 60여 가구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 영천동굴이 위치한 영천리 일대에는 이 지역에 분포된 하부고생대 탄산염암의 용식작용에 따른 소규모 동굴들이 산재되어 있음
- 영천동굴의 동측과 북동측 배후산지에는 석회석 광산이 운영되고 있음
- 영천동굴은 6.25 전쟁 시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음이 마을 주민들에게 구전되어 오며, 농산물의 저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음

○ 연혁 및 유래

- 1973년 한국동굴학회에 의해 영천동굴에 대한 탐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음
- 2008년 ‘충북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III’(문화재청)에서 ‘다’급(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의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보유하여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동굴)으로 평가되었음
- 2014년 한국동굴학회에 의한 조사를 통해 대규모 수중동굴의 발달 가능성이 제시되었음

○ 특징

- 전술한 영천동굴에 대한 이전의 조사결과와 최근에 이루어진 영천동굴 내의 수중 촬영자료 및 이번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천동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질)

- 영천동굴이 형성된 바탕 암석은 영월형 조선누층군 홍월리층(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탄산염퇴적암으로 홍월리층은 주로 결정질의 돌로마이트(백운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임
- 동굴 내에 분포한 탄산염암층에는 층리와 절리, 단층 등의 지질구조면들이 여러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어, 이들 구조면들을 따른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 등이 영천동굴의 내부 구조 형성에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탄산염암의 조직과 성분 차이 등 또한 차별 침식과 용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짐
- 동굴 입구에서 호소로 이어지는 구간의 바닥은 점토로 덮여 있으며, 일부에는 역질층이 퇴적되어 있음

(지형)

- 동굴의 최대 폭 약 5 m, 최대 높이 4 내지 5 m 정도로 조사되었음(2014 단양군 조사의견서)
- 동굴 입구로부터 60여 m 지난 지점에서부터 수중호수가 100여 m 구간에 걸쳐 단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제시되었음(2014년 한국동굴학회 조사결과)

(동굴생성물)

- 종유석, 석주, 석순, 유석, 종유관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규모 또는 특이성이 높은 동굴생성물의 발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생성물들이 훼손된 상태임

(동굴생물)

- 노래기류, 나방류, 박쥐, 꼬등이, 개구리 등 대부분 동굴 외래기원 동물의 서식이 이전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수중 구간 생물상의 특이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의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영천동굴이 가지는 지질, 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상 등에서의 특성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천연동굴로 지정되는 데에는 특이성이나 희귀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 지역에는 발달이 드문 호소성 수중 구간이 동굴 내에 발달된 측면에서 천연동굴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굴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15. 9. 4.)

○ 문화재 명칭 : 단양 영천동굴

○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동굴은 행정구역상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 1번지에 위치하며, 갑산의 남동측 기슭부(해발고도 약 210m)에 동굴의 입구가 존재한다. 5번 국도에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로부터 북북동 방향으로 800여m 정도 떨어진 계곡 상부에 위치한다.
- 동굴 입구 부근은 바닥, 벽, 천장은 시멘트 등에 의해 보강이 이루어져 있다.
- 동굴 아래는 용출수에 의해 작은 개울(영천)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개울을 중심으로 60여 가구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영천동굴은 6.25 전쟁 시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음이 마을 주민들에게 구전되어 오며, 농산물의 저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연혁·유래

- 1973년: 한국동굴학회에 의해 영천동굴에 대한 탐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나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확인한 결과, 수록 사진은 이 동굴인 영천동굴이지만 설명은 영천곰굴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한 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2008년: '충북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III'(문화재청)에서 '다'급(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적 가치는 없으나 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의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보유하여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동굴)으로 평가되었다.
- 2014년: 한국동굴학회에 의한 조사를 통해 대규모 수중동굴의 발달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조사 내용의 일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

○ 특징

- 전술한 영천동굴에 대한 이전의 조사결과와 최근에 이루어진 영천동굴 내의 수중 촬영자료 및 이번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천동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질)

- 영천동굴이 형성된 바탕 암석은 영월형 조선누층군 홍월리층과 삼태산층(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탄산염퇴적암으로 이 층들은 주로 결정질의 돌로마이트(백운암)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 동굴 내에 노출된 암석은 층리와 절리가 발달하며, 이들 약대(弱帶)를 따라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 등이 발달한다.
- 동굴 입구에서 동굴호수로 이어지는 구간의 바닥은 점토로 덮여 있으며, 일부에는 석회질 성분의 교질작용으로 역들이 역암의 형태로 발달한다.

(지형)

- 동굴은 최대 약 5m의 폭을 보이며, 최대 4~5m의 높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4 단양군 조사의견서).
- 동굴 입구로부터 약 60여m 지점에서부터 동굴호수가 100여m 발달하며, 일부 구간은 동굴수로 채워져 발달한다(한국동굴학회, 2014)

(동굴생성물)

- 종유석, 석주, 석순, 유석, 종유관 등이 발달하며, 현재까지 다른 동굴에 비해 발달 규모나 특이한 동굴생성물이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동굴호수 구간을 제외하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발달한 동굴생성물은 대부분 훼손되었다.

(동굴생물)

- 동굴의 생물은 진동굴성, 호동굴성, 외래성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영천 동굴에서 발달된 생물은 노래기류, 나방류, 박쥐, 꼬마개구리, 개구리 등으로 바깥의 습한 곳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외래성 생물에 해당한다.

○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질, 지형,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또는 고고학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제출된 기존 보고 자료(한국동굴학회, 2014; 단양군, 2014; 문화재청, 2015) 그리고 현장조사에서는 특이성이나 가치 등이 기존에 지정된 다른 동굴 문화재와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수중동굴에 대한 조사와 상수원 보호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술 및 매장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조사에서도 “다급을 제안한바 있다. 따라서 이 동굴을 학술 및 매장문화재로서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전문가 자문 회의('15.10.16.)

(\*\*\* \*\*대 교수)

- 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동굴의 학술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단양 영천동굴은 일반적으로 동굴에서 자주 관찰되는 2차 생성물과 석회암지대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카르스트 지형을 가지고 있음. 또한 동굴 2차 생성물의 규모 및 형태가 뚜렷한 특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조사용역보고서와 영상자료를 근거로 지질학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현재로서 영천동굴은 천연기념물로서 가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 다 등급에 해당함.
- 그러나 동굴의 미조사 지역이 있으므로, 추후 정밀 조사가 수행되어 학술적 가치가 입증되면, 천연기념물 등재를 위한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관계전문가)**

- 영천동굴은 석회동굴로서 일반적인 동굴생성물과 동물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성, 특이성 및 규모 등의 견지에서 탁월하지 못하며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과 비교해서 우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영천동굴의 수중 구간은 일반적인 석회동굴 내 지하수가 유동하는 수로형에 가까우며 동굴 바닥의 기복 변화에 따라 수심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소동굴과 같은 수중동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전체적으로 빈약한 소규모의 동굴생성물이 발달하고, 수중 구간에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지질학적 작용을 받은 흔적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므로 동굴 발달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4기 고기후 및 구조운동사와의 관련성이나 그 기록을 보유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짐.
-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영천동굴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명확한 지질학 및 생물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영천동굴은 보편적인 석회동굴로서, 지질학적 특이성이나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지 않아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관계전문가)**

- 학술성 총론
  -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생물군은 대부분 동굴 주변에서 서식하는 일반적 생물들로서 학술적 가치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학술조사의 전반적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전문가 검증이 전혀 안된 것으로 여겨짐.
  - 이에 현 시점에서 영천동굴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보고서 전반적 의견

- 체계성 : 기본적 보고서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의 일관성 (서론, 본론, 결론 등) 등을 지니고 있지 못함
- 학술성 : 탐험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구술표현이 중심으로서, 각 주요 생물종에 대한 국명조차 객관화된 기준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음
- 신뢰성 : 동굴생물의 기본적 이해에 대한 속성도 배제된 채 산개구리류의 이름에 동굴헌터라는 비학술적 내용의 오류 및 가재를 가재로 표현하는 오타 등 보고서 검증도 안 되어 있음

(3) 지자체 의견 (\*\*\*) 의견/ 2015.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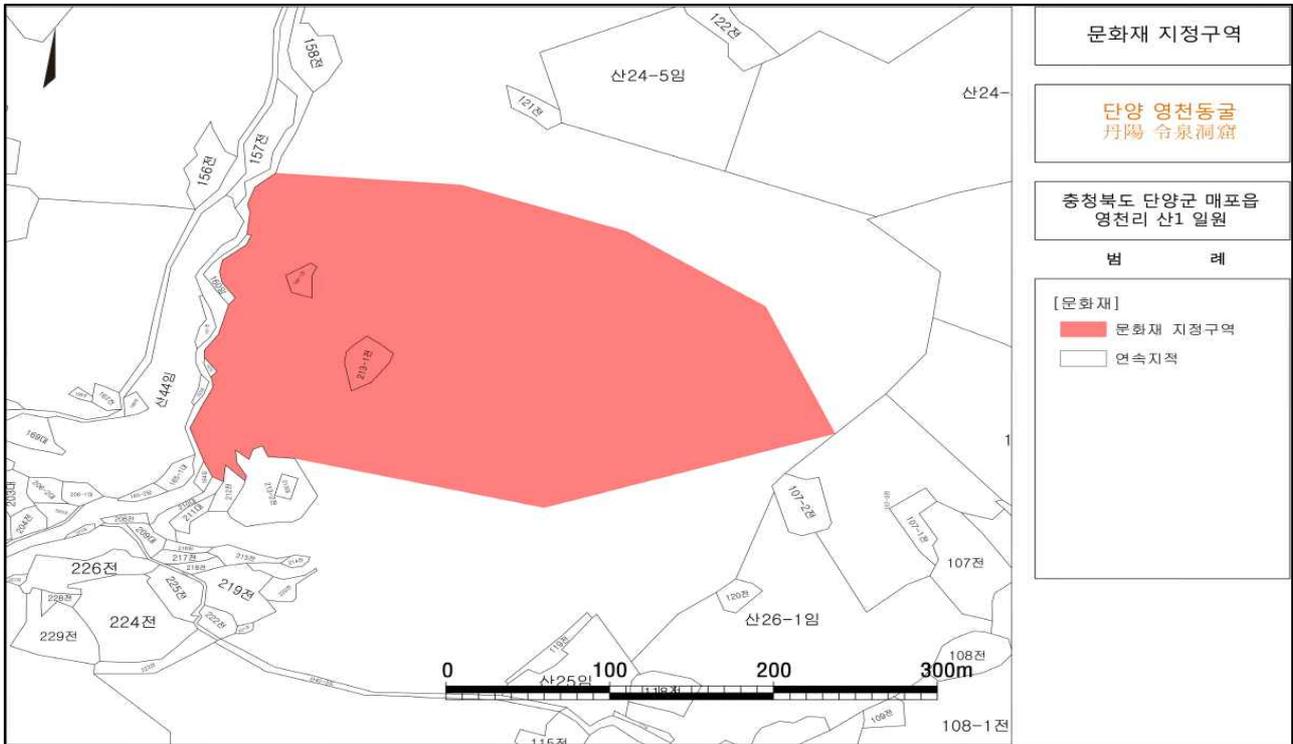
- 석회암지역이 발달해 있는 단양군 지역에는 200여개의 동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 영천동굴 또한 2008년 문화재청에서 용역 발주한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 조사 시에 동굴의 개략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동굴입니다.
- 당시 조사에서는 주굴과 지굴 약 110m 정도가 조사되었으며, 굴의 막장구간은 호수구역으로 진입이 불가능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14년 영천동굴 수중구간에 대한 조사결과 약 210m의 수중구간이 확인되었으며, 동굴생성물 발달 및 동굴생물이 일부구간에 서식하고 있는 현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 문화재지정구역(안)

○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1	충북 단양군	산1	임	1,662,347	66,053.0	(주)현**	
2	매포읍 영천리	213-1	전	717.0	717.0	조**	
3		160-1	전	301.0	301.0	조**	
	계			1,663,365	67,071.0		

○ 지형도면



아. 의결사항 : 부결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5-10-19

1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38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채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실내 체력단련장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3m이격, 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돌곶이 소대초소 실내 체력단련장 신축 · 지상 1층, 높이 4.4m, 연면적 30㎡, 일반철골구조, 기존 철재 파고라 철거 ○ 허가기간 : 2015.9.21.~2016.6.30. ○ 허가조건 - 소음이 큰 장비의 운용 및 공사를 채두루미 서식기간 (11월~3월) 동안 시행하지 않을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가시연꽃 복원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강서구 대저*동 ***, 대저*동 **** * 문화재 구역 및 약400m이격, 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가시연꽃 복원사업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채취) 맥도생태공원에서 종자채취 12,000개(12,000m<sup>2</sup>)</li> <li>· (종자보관·모종생산)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옆 인공연못 (6×4×1m)에 12,000개의 종자 보관 및 모종생산 4,000본</li> <li>· (가시연꽃 이식) 대저생태공원 내 수생식물원 2,000m<sup>2</sup>, 삼락생태공원 습지원 내 2,000m<sup>2</sup></li> <li style="padding-left: 20px;">* 화명생태공원 수생식물원 내 6,000m<sup>2</sup></li> </ul> <p>○ 허가기간 : 2015.10.5.~2016.12.31.</p>	
	<p>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삼락생태공원 미로공원 조성***</li> <li>*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500m이격, 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삼락생태공원 미로공원 조성</li> <li>· (식재공) 팽나무(R20~30) 13주, 물억새 식재 238,250본, 왕버들(R20) 4주, 초화류 식재 6,700본 등</li> <li>· (시설물공) 데크구름다리(L 50, B 4, H 2.5), 관리실(3m×6m),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안내판 10개소, 의자 10개소 등</li> <li>· (포장공) 투수블럭 960m<sup>2</sup>, 잔디블럭 741m<sup>2</sup>, 마사토 (T100) 460m<sup>2</sup>, 모래포장720m<sup>2</sup> 등</li> </ul> <p>○ 허가기간 : 2015.10.5.~2016.12.31.</p>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 구름다리는 외관상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며(바닥이 물억새 높이보다 낮게 시행)</li> <li>- 조성공사는 철새 도래시기를 피하여 시행하도록 함</li> </ul>	<p>&lt;조건부 허가&gt;</p>
	<p>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신전항 물양장 설치</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일원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 신전항 물양장 설치</li> <li>· 공유수면 매립 5,620m<sup>2</sup>, 준설 3,000m<sup>2</sup>(준설량 12,000m<sup>3</sup>)</li> </ul> <p>○ 허가기간 : 2015.10.12.~2018.9.30.</p>	<p>&lt;조건부 허가&gt;</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조건</li> <li>- 준설 부유물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2중 오탐방지막을 설치</li> <li>- 소음이 큰 장비의 운용 및 공사는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금지</li> <li>※ 육상시설은 별도 허가절차를 거쳐 실시</li> </ul>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학술 · 교육자료 활용</li> <li>○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박제</li> <li>○ 수량 : 수달 사체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학술 · 교육자료 활용</li> <li>○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박제</li> <li>○ 수량 : 솔부엉이 사체 2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4호 흰꼬리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학술 · 교육자료 활용</li> <li>○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박제</li> <li>○ 수량 : 흰꼬리수리 사체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학술 · 교육자료 활용</li> <li>○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박제(골격표본 제작)</li> <li>○ 수량 : 1개체</li> <li>-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사체 1개체</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산양 생태축 복원을 위한 증식, 연구</li> <li>○ 허가사항 : 산양 사육</li> <li>○ 수량 : 1개체</li> <li>- 입수경위 : 기 사육 허가된 개체로부터 출생</li> <li>○ 허가기간 : 2015.10.14~2020.10.13</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자연복귀를 위한 방사 훈련</li> <li>○ 허가사항 : 독수리 사육</li> <li>○ 수량 : 1개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수경위 : 한국조류보호협회 *****회 보호 중인 개체 사이의 출생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20~2016.02.29</li> <li>○ 허가조건 : 2016.02.29까지 방사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자생산호류 종다양성 연구를 위한 유전자 분석 연구</li> <li>○ 허가사항 : 해송</li> <li>○ 수량 : 해송 1개체</li> <li>○ 채집장소 : 부산 사하구 다대동 ***** 일원</li> <li>○ 허가기간 : 2015.10.20~2016.11.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집 개체는 개체당 크기(최장 길이) 50cm 미만으로 한정하며 채집 시 관할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받을 것</li> <li>- 금회 허가는 채집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며, 채집을 성공하여 표본제작(액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멸실신고 및 현상변경(표본제작)허가를 따로 득해야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7호 긴가지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자생산호류 종다양성 연구를 위한 유전자 분석 연구</li> <li>○ 허가사항 : 긴가지해송 채집</li> <li>○ 수량 : 긴가지해송 1개체</li> <li>○ 채집장소 : 부산 사하구 다대동 ***** 일원</li> <li>○ 허가기간 : 2015.10.20~2016.11.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집 개체는 개체당 크기(최장 길이) 50cm 미만으로 한정하며 채집 시 관할 담당자의 입회하에 확인 받을 것</li> <li>- 금회 허가는 채집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며, 채집을 성공하여</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표본제작(액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멸실신고 및 현상변경(표본제작)허가를 따로 득해야 함.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내 수목 식재</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번지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면적 : 570m<sup>2</sup>(폭 6m, 길이 95m)</li> <li>· 식재수량 : 총 6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송(H3.0m*W1.2m*R10cm) 21주</li> <li>·· 후박나무(H3.0m*R8cm) 21주</li> <li>·· 동백나무(H2.0m*W1.0m) 20주</li> </ul> </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13~2016.10.12</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되, 식재수종은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록활엽수(생달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위주로 식재하고 낙엽활엽수 및 곰솔은 식재계획에서 제외</li> </ul> </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6.25 전사자 유해발굴</li> <li>- 사업위치: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번지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우산 정상 돌무덤 일대, 천우산 정상 능선 좌우측 개인호 2개소( 50m* 50m/ 깊이 50cm) 잡관목 풀베기 후 발굴하고 해당지역 복토</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14~2015.12.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소백산 주목군락 내 기상관측시설(AWS) 설치</li> <li>- 사업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철구조물 기상관측시설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기탑(높이4m), 강수량계(높이1m), 태양열 패널 밧데리 (높이1.5m)</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20~2015.12.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번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90m이격, 허용기준 3구역)</li> <li>○ 허가사항 : 공장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9,916㎡, 건축연면적 2,415㎡(2개동) , 건축물높이 : 9.1m</li> <li>- 보강토옹벽 H=0.7~5.5m, L=306.4m</li> <li>- 메쉬웬스 H=1.2m L=226m</li> <li>- 성토 : 최고 11.30m 절토 : 최고 15.30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과정에 나타나는 백악기 암반과 전석 등에 대해서는 화석 산출 여부와 퇴적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련 전문 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번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90m이격, 허용기준 3구역)</li> <li>○ 허가사항 : 공장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면적 8,257㎡, 건축연면적 2,415㎡ (2개동),</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건축물 높이 9.1m</p> <p>-보강토옹벽 H=0.7m~5.5m L=428.6m</p> <p>-역L형옹벽 H=2.0~6.0m L=112.1m</p> <p>-성토 : 최고 11.70m</p> <p>○ 허가조건</p> <p>-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과정에 나타나는 백악기 암반과 전석 등에 대해서는 화석 산출 여부와 퇴적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p> <p>○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p>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번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90m이격, 허용기준 3구역)</p> <p>○ 허가사항 : 공장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p> <p>- 사업면적 8,029㎡ -건축면적 975㎡(1개동)</p> <p>- 역L형옹벽 H=2.0~6.0m, L=164.2m</p> <p>- 보강토옹벽 H=0.7m~5.5m L=498.3m</p> <p>- 진입도로 3,826㎡(최대절토고 H=8.4m, 최대성토고 H=14.0m)</p> <p>○ 허가조건</p> <p>-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과정에 나타나는 백악기 암반과 전석 등에 대해서는 화석 산출 여부와 퇴적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p> <p>○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p>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00m이격, 허용기준 1구역)</p> <p>○ 허가사항 : 현장 배치플랜트 및 골재야적장</p>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가설 건축물) 축조 - 대지면적 : 7,394m <sup>2</sup> , - 건축면적 : 463.54m <sup>2</sup> (2동 건축) - 최고높이 : 12.850m ○ 허가조건 - 우수수처리계획, 폐수처리계획, 진출입로계획,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계획, 피해방지 계획 등 수립된 계획은 철저히 이행토록 할 것. ○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8. 31.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청인 : *** ○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30m이격, 허용기준 3구역) ○ 허가사항 : 공장 신축 - 대지면적 3,858m <sup>2</sup> , 건축면적 923.09m <sup>2</sup> (2동), 건축물 최고높이 12.0m - 보강토옹벽 H=10.~4.0m, L=105.0m - 성토 : 최고 3.60m 절토 : 최고 1.00m ○ 허가조건 -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과정에 나타나는 백악기 암반과 전석 등에 대해서는 화석 산출 여부와 퇴적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련 전문 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 ○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청인 : *** ○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50m이격, 허용기준 3구역) ○ 허가사항 : 공장 신축 - 대지면적 3,720m <sup>2</sup> , -건축연면적 975m <sup>2</sup> (1개동),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건축물 높이 9.1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강토옹벽 H=0.7~5.5m, L=78.3m</li> <li>- 메쉬웬스 H=1.2m L=78m</li> <li>- 성토 : 최고9.10m, 절토 : 최고 6.60m</li> </ul>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과정에 나타나는 백악기 암반과 전석 등에 대해서는 화석 산출 여부와 퇴적층의 특성 파악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li> </ul> <p>○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p>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번지 (문화재 구역 내)</p> <p>○ 허가사항 : 얼음골 주변 콘크리트 철거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평상 6개소</li> <li>- 콘크리트 의자 5개소</li> </ul>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할 것.</li> </ul> <p>○ 허가기간 : 2015. 9. 25 ~ 2015. 11. 30.</p>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번지 (문화재구역 내)</p> <p>○ 신청사항 : 자연휴양림 도로 및 전기·통신관로 등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L=1090m, B=4m정도 ⇒ (변경) 도로 확폭 : L=1090m, B=7m정도</li> <li>- (기존) 지상 노출된 전기·통신관로, 급수시설 ⇒ (변경) 전기·통신 관로 및 상수도 지하 매설</li> </ul>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관 교체를 위한 굴착과 재매설시에는 도로변의</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p>수목과 자연석에 훼손이 없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매설부 노면 포장시에는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li> </ul> <p>○ 허가기간 : 2015. 9. 25 ~ 2016. 9. 30.</p>	
	<p>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소천굴)</p>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번지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40m이격, 허용기준 3구역)</p> <p>○ 신청사항 : 축사(돈사)증·개축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551.06㎡(축사5개동, 관리사 1개동)</li> <li>-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li> <li>- 높이 : 4.2m</li> </ul>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증·개축시 가축분뇨 저장 처리시설의 누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할 것 .</li> <li>- 터파기 등으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할 것.</li> </ul> <p>○ 허가기간 : 2015. 10. 12 ~ 2017. 4. 30.</p>	<p>&lt;조건부 허가&gt;</p>
	<p>천연기념물 제418호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산지</p>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공유수면)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80m이격, 허용기준 3구역)</p> <p>○ 신청사항 : 보트 계류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류시설 : 24선석</li> </ul> <p>○ 허가기간 : 2015. 10. 19 ~ 2016. 10. 18.</p>	<p>&lt;허가&gt;</p>
	<p>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p>	<p>○ 신청인 : ***</p> <p>○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번지 ** (문화재 구역 내)</p> <p>○ 신청사항 : 우음도 진입도로 포장</p>	<p>&lt;조건부 허가&gt;</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개선구간 종점 ~삼거리 : B=7m, L=350m</li> <li>- 방문자센터~우음도 진입부 : B=6m, L=2,990m</li> <li>- 환경학교 진입로 : B=4m, L=1,270m</li> </ul>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 저감방지를 위해 재생 아스팔트 도로 포장재를 사용할 것.</li> </ul> ○ 허가기간 : 2015. 10. 20 ~ 2016. 10. 19.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청운동 산1-1 북악 3대기소초 증개축</li> <li>- 위치 : 서울 종로구 청운동 *** (문화재정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소초(건축면적 45.68㎡, 지상1층, 철골조) 증개축, 목재휀스(H=2m, L=6m) 설치 등</li> </ul> </li> </ul> ○ 허가기간 : 2015.10.5. ~ 2015.12.31.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건물 최고높이는 3.3m 이하로 조정할 것</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서귀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사</li> <li>-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li> <li>* 문화재로부터 420m 이격(2구역: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지하 3m이상 굴착 시 허가 절차 이행)</li> <li>-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371.08㎡, 연면적 1,972.51㎡, 높이 26.2m(지하 1층, 지상 8층)</li> </ul> </li> </ul> ○ 허가기간 : 2015.10.7. ~ 2016.10.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토평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사</li> <li>- 위치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 ***</li> <li>* 문화재로부터 430m 이격(2구역: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지하 3m이상 굴착 시 허가 절차 이행)</li> <li>- 사업내용 : 관광숙박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564.25㎡, 연면적 1,589.18㎡, 높이 12.4m (지하 1층, 지상 4층)</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7. ~ 2016.11.30.</li> </ul>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재해위험 개선지구(송산지구) 정비사업</li> <li>-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번지 일원</li> <li>* 문화재로부터 0m~150m 이격(문화재구역, 2구역: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li> <li>- 사업내용 : 사면 복원 1,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절취 57㎡, Rock bolt 331㎡, Soil nailing 및 녹생토 283㎡, 돌 쌓기 35㎡, 자연사석 488㎡</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록볼트 공법으로 시공 시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19.~2016.12.31.</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 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송광사 감로암 하수관로 설치공사</li> <li>- 위치 : 전남 순천시 송광명 신평리 **번지 외 2필지 (문화재구역 내)</li> </ul> </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하수관로 매설(L=210m)</li> <li>○ 허가기간 : 2015.10.19.~2015.12.31.</li> </ul>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li> <li>- 사업명 : 주왕산 이동통신 공용화중계기 설치</li> <li>-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 공용화중계기(소나무형 21m 강관주 1본) 설치</li> <li>○ 허가기간 : 2015.10.26.~2015.12.31.</li> </ul>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li> <li>- 사업명 : 2015년 다누비 열차 탑승장 차양시설 설치</li> <li>-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 (문화재구역 내)</li> <li>- 사업내용 : 다누비열차탑승장 막구조 차양시설 설치 (2개소)</li> <li>○ 허가기간 : 2015.10.26.~2015.12.31.</li> </ul>	<허가>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li> <li>- 사업명 : 지방도 1024호 굴곡부 도로변 포장 및 하천 정비</li> <li>-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 *** * 문화재로부터 10m 이격(1구역:기존 규모 개축·재축 허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 포장 72㎡, 가드레일 설치 12m</li> <li>· 하천 전석 쌓기 L=18.9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5.10.26.~2015.12.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개체 수 증식을 통한 종보존</li> <li>○ 허가사항 : 원앙 사육</li> <li>○ 수량 : 50개체</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0.09.30까지</li> <li>○ 변경허가 사유 : 허가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개체수 증가에 따른 변경</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방사 후 자연적응상태에서의 행동권 및 생태특성 연구를 위한 모니터링</li> <li>○ 허가사항 : 사육 산양 발신기 부착 후 방사</li> <li>○ 수량 : 4개체</li> <li>○ 허가기간 : 2015.10.14~2017.09.29까지</li> <li>○ 변경허가 사유 : 당초 사육 허가받는 개체를 방사하여 행동권 및 생태특성 연구 수행하기 위함</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201-3호 흑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목적 : 흑고니 복원을 위한 증식, 연구 등</li> <li>○ 허가사항 : 흑고니 사육</li> <li>○ 수량 : 50개체</li> <li>○ 허가기간 : 2014.12.22~2019.12.21까지</li> <li>○ 변경허가 사유 : 번식에 의한 개체수 증가</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삼락생태공원 잔디 및 물억새 식재 등</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 일원</li> <li>*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약300m이격, 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삼락생태공원 잔디 및 물억새 식재</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디 188,000m<sup>2</sup></li> <li>· 물억새 12,00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디 164,500m<sup>2</sup></li> <li>· 물억새 35,500m<sup>2</sup></li> <li>· 차폐수목 식재 1,254주</li> <li>* 느티나무 30주, 대나무 124주</li> </ul>	
		허가기간	2014.4.10.~2015.10.31.	2014.4.10.~2015.11.30.	
		<p>○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새 도래 전 소음·진동 등이 큰 공정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li> </ul>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